

2024년 4월호

정운관세법인 소식지

2024년 4월 정운 소식

1) 관세동향



[1] 2024 경제정책방향 - 과일 물가 폭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3.6.(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4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1만톤 신속 도입(1,375억원 관세 지원). - 오렌지 · 바나나 등을 직수입(aT)하고 수입과일 3종에 신규 관세 인하
-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총 29종의 과일에 대해 관세인하를 적용
- ** [전년 대비(2월말)] 바나나 43%증가(4만4천톤→6만3천톤), 파인애플 31%증가(9천6백톤→1만3천톤)



사진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2] 대러 수출통제 확대 관련 안내

○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2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이행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수출하려는 품목의 HSK에 대해 연계표를 조회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 후 허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는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번호 1~243번)와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개(번호 244~1,159번)로 구분됩니다.

1) 관세동향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우측 끝의 “HSK”(노란색 바탕)를 참고하시고,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상 “HS code”(하늘색 바탕)란에 기재된 6자리 HS co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HSK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ee Category 5, Part 1 (Telecommunications)				
		c. “디지털 컴퓨터” 및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은 별표 2 4E에 의해 결정된다.	c. The “technology” for the “digital computers” and related equipment is determined by 4E.				
	각한 온도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a. 343 K(70 °C) 이상의 주변 온도에서 작동하는 전자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전자 조립품” 및 “전용 설계된” 부품 및 “구성품”	a. Electronic computers and related equipment, and “electronic assemblies” and “specially designed” parts and “components” therefor, rated for operation at an ambient temperature above 343 K (70°C).	4A001.a.1	-	러시아, 벨라루스	8471.41-9000 8471.49-9000 8471.50-9000 8471.80-9000
	신호 처리 또는 이미지 향상 장비	b. 0.0128 Weighted TeraFLOPS(WT) 이상인 “최적수행성능”(“APF”)을 갖는 “신호 처리” 또는 이미지 향상 장비를 포함하는 “디지털 컴퓨터”	b. “Digital computers”, including equipment of “signal processing” or image enhancement, having an “Adjusted Peak Performance”(“APF”) equal to or greater than 0.0128 Weighted TeraFLOPS (WT).	4A003.b	-	러시아, 벨라루스	8471.41-9000 8471.49-9000 8471.50-9000 8471.80-9000
	고성능 컴퓨터 (별첨처리 컴퓨터)	c. 프로세서의 통합에 의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용 설계”되거나 개조된 “전자 조립품”로 다음의 것: c.1. 16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주1: 9면 c항은 통합되지 않은 “전자 조립품”으로 배송될 때 b항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APF”를 가진 “전자 조립품”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상호 연결에만 적용된다. k항에서 통제하는 관련 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전자 조립품”은 통제되지 않는다. 주2: 9면 c항은 최대 구성이 b항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또는 제품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전자 조립품”을 통제하지 않는다.	c. “Electronic assemblies” that are “specially designed” or modified to enhance performance by aggregation of processors, as follows: c.1. Designed to be capable of aggregation in configurations of 16 or more processors: Note 1: paragraph 9.c applies only to “electronic assemblies” and programmable interconnections with a “APF” not exceeding the limits in paragraph 9.b, when shipped as unintegrated “electronic assemblies”. It does not apply to “electronic assemblies” inherently limited by nature of their design for use as related equipment controlled by paragraph k. Note 2: paragraph 9.c does not control any “electronic assembly” “specially designed” for a product or family of products whose maximum configuration does not exceed the limits of paragraph b.	4A003.c 4A003.g	-	러시아, 벨라루스	8471.41-9000 8471.49-9000 8471.50-9000 8471.80-9000

예시



○ HSK를 검색하여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번호 1~243번)에 해당되는 HSK(노란색 바탕)로 조회된 경우 품명, 상세사양까지 확인하시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출하려는 품목과 무관한 HS code를 입력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또한 최근 대 러시아 뿐 아니라, 품목이 비제재 대상임에도 거래 대상이 **우려거래자**일 수 있으므로, 해외거래처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미국 OFAC 제재 리스트 조회(<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 EU 제재 리스트조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4R0269-20230208>)

- 우려거래자 조회

(메인화면-> “우려거래자 검색” 클릭)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 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 관세청은 3월 21일(목)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여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 ①50cm²미만: 8포인트 이상, ②50cm²~3,000cm²: 12포인트 이상, ③3,000cm²이상: 20포인트 이상

□ 現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표시사항	글자크기
국내가공품 (국내제조)	배합 비율(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의 원산지 * 예) 꿀향 일가루(호주산), 꿀국산, 동부중국산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국산 농수산물	국내산 또는 시·도, 시·군·구 명	포장면적에 따라 상이 3,000cm ² 이상 : 20포인트 이상 50cm ² 이상 : 12포인트 이상 50cm ² 미만 : 8포인트 이상
수입 농수산물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국가)	
수입 가공품 (국외제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국가)	

* 1포인트=1/28cm(≈0.0357cm)



□ 수입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품 기준과 통일(시행규칙 개정)

항목	현행	개정
수입 가공품 (국외제조·수입)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 포장면적에 따라 상이 3,000cm² 이상 : 20포인트 이상 50cm² 이상 : 12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 : 8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 국내가공품 글자크기와 통일

-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습니다.

- 아울러, '22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국내생산물품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

2. FTA 이슈



[1] 2024년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2024년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을 공고 합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하여 원산지관리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정착하고 협력기업을 포함한 수출 공급망 FTA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 FTA 컨설팅 사업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4.5(금) 18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간)
- (지원대상) :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수출기업(모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시, 협력기업도 지원대상으로 자동 포함
- (지원규모) : 총27개社 내외(수출기업 기준)
- (신청기간) : 2024년 4월 5 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 함께 이메일 (ftaplus.ktnet.co.kr)로 제출

[2] 2024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FTA 체결·발효에 따라 정부 부처 및 21개의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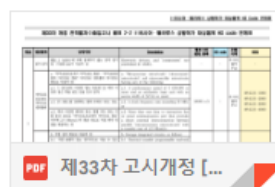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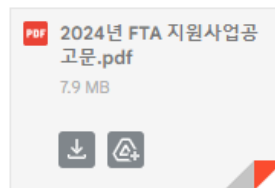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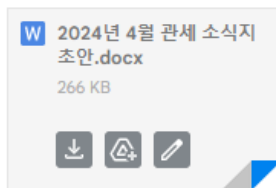
○ FTA 활용촉진, FTA시장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4개 세부사업

분야	세부산업
FTA 활용촉진지원 (11개)	①FTA 현장 컨설팅(OK FTA컨설팅), ②YES FTA 전문교육, ③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 ④찾아가는 FTA 서비스, ⑤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⑥FTA 해외활용지원센터, ⑦취업 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 ⑧대학 FTA강좌 지원, ⑨FTA 이러닝, ⑩FTA분야 농업인 등 교육·홍보 사업, ⑪ FTA 활용 컨설팅 교육
FTA 시장진출지원 (21개)	①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통합형), ②수출컨소시엄, ③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④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⑤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⑥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⑦비관세 장벽 상담·컨설팅, ⑧농산물·농식품 판매조직 육성, ⑨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⑩우수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⑪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⑫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⑬임산물 수출 지원, ⑭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⑮콘텐츠 해외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 국내 K-뷰티 체험 홍보관 상설 운영,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검역해소 품목 및 전략품목 육성지원, FTA TBT 종합지원
한·중 FTA 특화사업 (3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재해보험, ⑥생분해어구 보급, ⑦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⑧천일염 생산·유통시설지원(자동채염기 지원), ⑨현장 전문인력 양성(K-뷰티 아카데미 운영)
산업경쟁력 강화지원 (9개)	①무역조정지원, ②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 ③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종합지원, ④꿀 가공산업 육성, ⑤어업재해보험, ⑥생분해어구 보급, ⑦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⑧천일염 생산·유통시설지원(자동채염기 지원), ⑨현장 전문인력 양성(K-뷰티 아카데미 운영)

○ FTA 체결 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개
중앙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
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
중앙회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한국수산물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21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2024년도 FTA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078 호

*** 소식지 내 관련 개정문 및 부칙관련은 **메일상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5개 • Gmail에서 스캔함 ⓘ



함께성장하는 정운관세법인 입니다:)



본 소식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511-5926
E-mail : doc@jwccs.com

